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유료화장실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승인 및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후 불결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권고로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나.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비치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 화장실의 점검결과 불결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선명령을 하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5장, 제6장)
- 유료화장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안 제5장, 제6장)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근거는?                         | ○ 관련 상위법이 없어 그에 따른 승인과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
| ○ 동조례는 시민들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 조례를 우선 완화한 후 추후 폐지를 검토하겠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 148 호             |
| 의결년월일 | 99. 4. 15<br>(제70회) |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유료화장실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승인 및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후 불결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권고로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비치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 화장실의 점검결과 불결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선명령을 하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4조, 제15조)
- 유료화장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안 제5장, 제6장)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 내지 제7조를 동조 제4호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동조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을 "정비할 것"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을 "시설개선 권고"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개선권고)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 및 청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장·제6장·제15조 내지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설치기준) 1.~3.(생략)</p> <p><u>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5.~7.(생략)</p> <p>제10조(유지·관리기준) (생략)</p> <p>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p> <p>2. (생략)</p> <p>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시설개선 명령</b></p> <p>제14조(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 <p>제5조(설치기준) 1.~3.(현행과 같음)</p> <p>(삭제)</p> <p>5.~7.(현행과 같음)</p> <p>제10조(유지·관리기준)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 (현행과 같음)</p> <p>2. ....<br/>.....<b>정비</b><br/>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시설개선 권고</b></p> <p>제14조(개선권고)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 및 청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p> |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 내에,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삭제)

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삭제)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 안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2. 전담관리인을 둔 것
-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 등 편의 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정

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삭제)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아니할 것
-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 4. 기타 화장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삭제)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은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15조(시행규칙) (현행 제19조와 같음)